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의 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<u>형성을 위해</u> 주민이 주도하는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</u> ----- ----- -----</p>
<p>제16조(구성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</p> <p>1. <u>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</u></p> <p>2. <u>주민 대표, 전문가 및 마을만들기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</u></p> <p>⑤ (생략)</p>	<p>제16조(구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</p> <p>1. <u>주민대표</u></p> <p>2. <u>전문가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7조(임기) ① (생략)</p> <p>② <u>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구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7조(임기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위원</u> ----- -----</p>